

보다 안전한 미래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(우)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(수서동,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) / Tel 02-567-1307/ Fax 02-567-1337

www.assi.or.kr E-Mail : assi1337@naver.com 담당 : 박용복 국장

문서번호 시험 2020 - 338호

시행일자 2020. 10. 26.

수 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

참 조 하천계획과장

| | | | | |
|---|----|---|---|--|
| 선 | | | 지 | |
| 결 | | | 시 | |
| 접 | 일자 | | 결 | |
| | 시간 | | 재 | |
| 수 | 번호 | | 공 | |
| 처 | 리 | 과 | 람 | |
| 담 | 당 | 자 | | |

제 목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개선 요청

1. 국가시설물의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청에 경의를 표합니다.
2. 귀 청의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 4항과 동법 「시행령」 제100조의 1,2항,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」에 따라 실시한 ‘노성천 광석지구 하천정비사업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용역’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발주와 관련입니다.
3. 위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귀 청의 「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이 국토교통부의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」에 따른 실적인정 기준과 상이한 바, 이를 위 지침에 따라 적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며, 가격평가에서 업체 간 과도한 저가경쟁을 유발시켜 국토교통부의 안전점검대가 기준의 50%대에서 결정되었는바, 안전관리의 부실과 안전점검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불임과 같이 가격평가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.

붙임 : (1)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협회 요구 사항 1부. 끝.
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

[붙임]

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협회 요구 사항

| 구 분 | 현행 기준 | 협회 요구 사항 | 사 유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|
| 사업수행능력 세부기준 (PQ) | 1. 자격 또는 등급평가 기준 | 이의 없음 | - |
| | 2.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3. 유사용역수행실적 -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, 긴급안전점검, 정기안전점검, 초기점검, 정밀안전진단, 성능평가 100% - 해당분야 외 정밀안전점검, 긴급안전점검, 정기안전점검, 초기점검, 정밀안전진단, 성능평가 80% - 해당 전문분야 외 토목분야의 시공, 설계, 정밀안전점검, 긴급안전점검, 정기안전점검, 초기점검, 정밀안전진단, 성능평가 등 60% |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 및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 제18조, 제23조, 제24조,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<u>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, 초기점검,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실적에 한해 인정</u> (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, 긴급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, 성능평가에 수행한 실적은 제외.) |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실적을 인정함이 타당함. 참조 :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⑨에 ☞ <u>기술인의 실적·업무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·업무중첩도는 건진법 시행령 제100조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하며, (이하 생략)</u> |
| | 4. 신용도 | 이의 없음 | - |
| | 5. 업무중첩도 | 이의 없음 | - |
| | 가격평가 | - 투찰가격이 균형가격 이하인 경우 100점 - 균형가격기준 투찰가격 증가시 감점(직선보간법) 적용 | 기초금액(안전점검비)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투찰범위 지정과 낙찰하한을 적용한 입찰법 적용이 필요 |
| 최종선정법 | PQ, 균형가격에 따른 최고득점 업체 선정 | PQ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업체점수를 종합평점을 지정하여 이를 기준하여 낙찰사 선정 | |